

분야	인사·서무	발생년도	2026년
제목	공무원 경력평정 시 경력 오산출 및 누락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지적 내용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Ⅲ(채용후보자 등 임용 전 실무수습) 4(실무수습 평가 및 임용)에 따르면 채용후보자 등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확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Ⅲ(경력평정) 2(환산경력기간)에서는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의 경력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아래 별표1(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한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table border="1"> <thead> <tr> <th>경 력</th><th>환 산 율</th></tr> </thead> <tbody> <tr> <td>가. 갑경력</td><td rowspan="4">10할</td></tr> <tr> <td>(1) ~ (4) 생략</td></tr> <tr> <td>(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 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td></tr> <tr> <td>(6) ~ (7) 생략</td></tr> </tbody> </table> 그러나, OO지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시행계획」에 따른 임용 전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 경력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잘못 산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있다.	경 력	환 산 율	가. 갑경력	10할	(1) ~ (4) 생략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 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6) ~ (7) 생략
경 력	환 산 율							
가. 갑경력	10할							
(1) ~ (4) 생략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 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6) ~ (7) 생략								
검토 및 조치할 사항	공무원 경력평정 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회계 · 계약	발생년도	2026년
제목	계약서류 확인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지적 내용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등 4대 보험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구매·용역 등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사실 확인 및 대가지급을 위해 아래의 각종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또는 대가 지급 시 확인서류 목록>

증명서류명	관련 법령	확인(제출) 시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계약서 작성 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대가 지급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그러나, OO지소는 용역·공사계약 3건에 대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날인 또는 기재사항 확인을 누락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공사·구매·용역 등 계약 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실 확인 및 대가지급을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복무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청사 방호인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지적 내용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등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날(5월1일)” 근무 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OO지소는 방호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 “근로자의 날(5월1일)” 휴일 적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24년 5월 1일에 근무한 청원경찰에 대해 현업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함으로써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각 8시간 적게 지급하였다. 또한, ‘25년도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방호직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함으로써 방호직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8시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한 청원경찰 000, 000, 000에게 각각 86,560원, 000, 000에게 각각 79,410원을 지급하고, 과지급된 방호00 000은 95,6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시정)

분야	복무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청사 방호인력 복무 관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적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3장(근무일과 공휴일/4. 현업공무원 등)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교대근무 등)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OO지소는 청사 방호인력 총 7명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운영하면서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청원경찰 1명을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부합 여부,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일반근무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원경찰 1명의 일반근무 기준(주 40시간)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일반근무형태의 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근무편성표 작성시 주 40시간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근무체제 변경 시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부합여부와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 사전검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유지보수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주파수 보안 관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업무 처리지침」 제4조(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 ○ 「보안업무규정」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지적 내용	「OO지소 유지보수 담당자는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업무 처리지침」 제4조(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연1회 무선연락망(송·수신설비) 시설의 고유성능*을 점검하고 ‘시설 고유성능 점검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장비가 구축·도입된 시기와 동등하게 운용 가능한 성능(주파수허용 편차, 출력, 안테나 정재파비, 수신감도 등) 또한, 「보안업무규정」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및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비밀의 구분 및 분류) 제5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OO지소는 감사대상 기간 중 보유중인 무선연락망 8대에 대한 고유성능 점검을 실시하면서, 전자문서에 첨부된 ‘시설 고유성능 점검부’에 무선국별 비밀주파수(OkHz 대역 1파, 0MHz 대역 2파) 측정 사진을 노출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관련자에게 “주의 “ 처분하고, 무선연락망 점검시 비밀주파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의)

분야	전파감시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이동전파감시 활동 실적 관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10조(이동전파감시)
지적 내용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10조(이동전파감시) 제1항 규정에 따라 고정전파감시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전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전파감시(무선국의 운용감시, 전파품질 측정, 불법전파탐사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세칙」 제10조 제4항 및 본소 ‘이동감시 활동 추진계획’에 따라, 이동전파감시 수행 후 7일 이내에 이동감시 실적, 차량출동 현황, 무선국 품질관리 등 이동전파감시 활동내역과 측정자료를 ‘전파방송 통신시스템’ 및 본소 ‘통합DB’에 입력·업로드 하여야 한다. 그러나, OO지소는 ‘24.2.1. ~ ‘26.1.31. 기간 중 총 22회의 이동전파감시 측정결과(점검무선국 정보, 점검시간 및 장소, 주파수, 대역폭, 전계강도, 편이, 편차 등)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에 따라 이동전파감시업무 수행 후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전파감시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전파 혼신원 조치 요구 기간 부적정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23조(혼신처리)
지적 내용	전파혼신조사 담당은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23조(혼신처리) 제1항 제2호에 따라 혼신조사 결과, 전파 혼신원에 대한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및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혼신원을 제거하도록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OO지소는 ‘24년도 5월에 발생한 ‘주식회사 OOO 이동통신 기지국 전파혼신’ 2건에 대한 혼신 처리 시 혼신을 유발한 시설자에게 사용중지 및 혼신원 제거 요청 문서를 통보하면서 조치요구 기간을 30일 이상(39일, 63일)으로 임의 지정·통보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전파 혼신원에 대한 조치 통보 시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무선국관리	발생년도	2026년
제목	무선국 허가시 통신상대방 미선정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법」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 「전파법 시행령」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지적 내용	「전파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파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5호에서는 허가증에 통신의 상대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서는 통신의 상대방을 변경 허가 신청할 경우 수수료 1천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O지소는 무선국 허가시 통신의 상대방을 선정하지 않은 사실(21국 38장치)이 있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미선정한 통신상대방을 선정하고, 통신상대방 선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무선국관리	발생년도	2026년
제목	무선설비 공동사용 심의·승인 처리 부적정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법」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 「전파법 시행령」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지적 내용	「전파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의하면 무선설비를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 계약서를 갖추어 무선설비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종(신청) 무선국 설치주소 및 공동사용 무선설비 설치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 승인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OO지소는 주·종 무선국의 설치주소가 다름에도 21국에 대해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심의·승인 처리한 사실이 있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공동사용 무선국 심의·승인처리 시 주·종무선국의 설치주소를 철저히 확인하기 바라며,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승인된 종(신청)무선국(21국)은 해지 처리 또는 재심의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유지보수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유지보수업무 관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업무 처리지침」 제4조(전파관리시설 예방 점검) 및 제14조(긴급복구반 및 긴급복구자재 관리)
지적 내용	① 긴급복구 자재 점검 소홀 「유지보수업무 지침」 제14조(긴급복구반 및 긴급복구자재 관리)에서는 유지보수 담당부서가 반기별로 감시·전산 시설 긴급복구용 자재 및 공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보관으로 인한 기능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동등 이상의 장비로 순환 대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O지소는 ‘24년 ~ ‘25년도 상·하반기 긴급복구용 자재 및 공구(케이블 등 46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사용 용도가 없어진 백업테이프(2종, 30개)를 점검 목록에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② 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 소홀 「유지보수업무 지침」 제4조(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에서는 운용 부서가 전파감시·조사단속·무선국검사·전자파강도측정·전파환경 조사 등 업무용 장비 및 예비시설로 분류한 장비에 대해 전원, 버튼 등 기본작동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 및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O지소는 이용자보호과에서 운용하는 업무용 장비 7대(불법 감청설비 탐지장비, 스펙트럼 분석기 등)에 대해, 총 6개월(‘24.10월 ~ 12월, ‘25.3월 ~ 5월)간 관련 지침에 따른 월간점검(전원·버튼 등의 기본작동 등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유지보수업무 지침」에 따라 점검하는 긴급복구 자재 목록을 현행화 하고, 부서별 운용하는 장비에 대해 예방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점검 및 기록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전기통신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전기통신설비 제공업무 관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및 「전기통신설비 제공 관련 관리·조사절차 매뉴얼」
지적 내용	OO지소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및 「전기통신설비 제공 관련 관리·조사절차 매뉴얼」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 제공 관련 관리·조사절차 매뉴얼」에서는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 및 이용 사업자 간 설비제공 조사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이슈의 개선·협력을 위해, 지역 전파관리소·지역 통신사·지역 SO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설비제공 지역협의회를 연 2회(반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O지소는 2025년 하반기 설비제공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향후 「관리·조사절차 매뉴얼」에 따라 설비제공 지역협의회를 연 2회(반기 1회) 이상 운영하기 바랍니다. (통보)